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장 서문교(054-429-4111), 서기관 최남근(4112) / 제공일: 8월 18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

- ´21.10.14.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 '가열 조리 또는 세척' 표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2021.10.14.부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등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됨

○ 표시대상: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

○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방법

① **버섯류**: "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, 충분히 **가열 조리하여 섭취**하시기 바랍니다." 또는 "**가열 조리**하여 드세요."

② **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·채소류**: "**세척 후** 드세요."

③ **신선편이 농산물**: "**세척 후** 드세요." 또는 "**가열 조리**하여 드세요."

* 「농산물 표준규격」 개정 (농관원 고시, 제2020-16호, '21.10.14.시행)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이주명, 이하 '농관원')에서는 "지난 2020년 10월 14일 「농산물 표준규격*」 고시 개정으로 **올해 10월 14일부터 '표준규격품'**으로 출하되는 **'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'**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**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**된다."라고 밝혔다.

* 표준규격품 :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"포준규격품"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

○ 이에 따라, 올해 10월 14일부터 **‘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’**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·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**‘세척 또는 가열’**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.

- 다만, **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**(파인애플, 감귤, 수박 등), **씻어서 먹는 품목**(고구마, 복숭아, 당근 등)은 **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**된다.

○ **농관원에서는** 공영도매시장,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**표준규격품(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)** 포장재 겉면에 **안전문구**가 적정하게 **표시**되었는지를 **점검**하고, **위반 업체**에 대해서는 **행정처분**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.

* 안전문구 미표시 행정처분 : 표시정지(1～3개월), 과태료 부과 등 조치

<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>

① **버섯류**: 팽이, 새송이, 양송이, 느타리버섯

② **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·채소류:** 사과, 포도, 금감, 단감, 자두, 블루베리, 양앵두(버찌), 앵두, 고추, 오이, 토마토, 방울토마토, 송이토마토, 딸기, 피망, 파프리카, 브로콜리

③ **신선편이농산물:** 세척, 박피(껍질 벗기기), 다듬기,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·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, 서류 및 버섯류

<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>

① **버섯류**: “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, 충분히 **가열 조리하여 섭취**하시기 바랍니다.” 또는 “**가열 조리**하여 드세요.”

② **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·채소류**: “**세척 후** 드세요.”

③ **신선편이 농산물**: “**세척 후** 드세요.” 또는 “**가열 조리**하여 드세요.”

□ **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**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**현장 지도 및 홍보**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○ **생산자 단체,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**으로 홍보물 배부, 누리소통망(SNS) 등을 통해 **안전문구 표시방법** 등을 **홍보**하고,

○ 또한, **공동선별조직,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**으로 **포장재 제작**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**현장 홍보를 추진**한다.

*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,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및 교육

□ **농관원 이주명 원장**은 "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**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** 등을 추진할 계획"이라고 하면서,

○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**"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,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**이다."라고 밝혔다.

참고 1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설명자료(Q&A)

1. 농산물 표준규격품이 무엇인가요?

○ 농관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**포장규격과 등급규격**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**"표준규격품"**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.

※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**의무표시사항**(농관원 고시)

① "표준규격품" 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(생산자단체) 명칭 및 전화번호 **⑧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(신설)**

2. 모든 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되나요?

○ **"표준규격품"**으로 출하하는 버섯류, 과실채소류,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의무 적용되며,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3.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**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**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, **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(파인애플, 감귤, 수박 등), 씻어서 먹는 품목(고구마, 복숭아, 당근 등)**은 제외하였습니다.

4.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○ 표준규격품에 대해 **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** 1차 시정명령, 2차 표시정지 1개월, 3차 표시정지 3개월 행정처분 되며, **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**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.

5. 안전문구 표시는 누가, 어디에 해야 하나요?

○ “표준규격품”으로 **출하·판매하는 자가 표시**해야 하고, **포장재 겉면**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.

6.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도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되나요?

○ **세척 사과, 세척 당근**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, 포장, 운송,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**표시를 생략**할 수 있습니다.

< 안전문구 표시 활용(예시) >

